

## 오산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

제정 2015년 4월 16일 조례 제1394호  
일부개정 2017년 4월 3일 조례 제1563호  
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  
일부개정 2018년 12월 26일 조례 제1693호  
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오산시 도시의 특성을 살리고 기능을 향상시키며 기존 생활공간에서 주민 스스로 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주거환경관리사업”이란 오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구역에서 시행되는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.
2. “주민”이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를 말한다.
3. “주민공동체운영회(이하 “운영회”라 한다)”란 기초자료 수집 및 현황 조사를 하여 세부전략, 주요계획 선정 등 마을 기본 구상계획 및 물리적·사회적·경제적 측면의 도시재생 추진을 위하여 주민, 관련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.

**제3조(책무)** ①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.

② 운영회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힘써야 하며, 그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시의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.

③ 운영회의 명칭, 책무, 구성, 운영 등 세부사항은 자체 운영규약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운영회 표준운영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.

**제4조(활성화계획)** ① 시장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오산시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계획(이하 “활성화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기본방향
2. 계획의 목표 및 조성전략
3. 채원 조달방안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지역별 또는 마을별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**제5조(사업지원)**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관련 정책을 통한 추진방향 설정
2. 국내·외 우수사례 수집·제공 및 전문가 자문
3. 운영회 활동을 위한 교육, 세미나, 워크숍 및 국내·외 견학
4.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마을만들기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운영회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, 주민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6조(위원회의 설치·기능)** 시장은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·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활성화계획의 수립·시행
2.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**제7조(위원회의 구성 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.

②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. <개정 2017. 4. 3, 2018. 12. 26>

1. 시민단체 대표
  2. 도시계획, 도시개발, 건축,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 3. 오산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
  4.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-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.

**제8조(위원회의 운영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**제9조(위원의 위촉해제)**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.

1.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2.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
3.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

**제10조(의견청취 등)**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**제11조(수당 등)**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「오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 및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 또는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**제12조(준용)**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

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13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2017. 4. 3 조례 제156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① 부터 ⑳ 까지 생략

㉓ 「오산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안전도시국장”을 “미래도시국장”으로 한다.

㉔ 부터 ㉖ 까지 생략

**부칙** <2018. 12. 26 조례 제169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① 부터 ㉑ 까지 생략

㉒ 「오산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미래도시국장”을 “도시주택국장”으로 한다.

㉓ 부터 ㉕ 까지 생략